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나261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지연, 최승록, 권선례, 김수연

변 론 종 결 2021. 3. 19.

판 결 선 고 2021. 5. 7.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0206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E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8.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접수 제13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011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6,831,468원 및 그중 1,945,048원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명령은 2017. 7. 30. E에게 송달되어 2017. 8. 15. 확정되었다.

나. E의 부친인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8. 8.경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G, H, I, E, J이 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8. 8. 3.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접수 제132364호로 2018.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 사건 각 부동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E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 2019하단38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8. 23.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19. 10. 25.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11. 12.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있기 전부터 E에 대하여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 ②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 E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E의 상속분인 2/13 지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E은 2003.부터 2006.경까지 영위하던 사업의 경영 파탄 등을 이유로 파산신청(수원지방법원 2019하단386)을 하였고, 위 파산사건에서 '국가에서 기초수급비 등의 명목으로 월 69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E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 등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E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왕래하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가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자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가 E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E의 사해의사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피고는 E과 금전문제로 불화가 깊어져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와 망인이 함께 생활하였던 실거주지에 한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두고 우리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추정을 반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 결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E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E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이지현, 판사 이일염

별지

(1)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L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M

구 조 벽돌조

면 적 제2층 N호 33.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성동구 L 대 72㎡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2 분의 19.5

(2)

1동 건물의 표시

서울 성동구 L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O

구 조 벽돌조

면 적 제3층 P호 20.8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 성동구 L 대 72㎡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72 분의 13.5 끝.

1) 2019. 2. 1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 2항의 '2018. 8. 3.'은 '2018. 8. 30.'의 오기이다.